

[별표 1]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3.01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<주야간보호 수가>

(단위 : 원)

분	류	2022년	2023년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☐ 장기요양 1등급	36,950	38.630
	☐ 장기요양 2등급	34,210	35.760
	☐ 장기요양 3등급	31,580	33.010
	☐ 장기요양 4등급	30,140	31.510
	☐ 장기요양 5등급	28,700	30.000
	☐ 인지 지원 등급	28,700	30.00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☐ 장기요양 1등급	49,530	51.780
	☐ 장기요양 2등급	45,880	47.960
	☐ 장기요양 3등급	42,350	44.270
	☐ 장기요양 4등급	40,910	42.770
	☐ 장기요양 5등급	39,450	41.240
	☐ 인지 지원 등급	39,450	41.24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☐ 장기요양 1등급	61,600	64.400
	☐ 장기요양 2등급	57,070	59.660
	☐ 장기요양 3등급	52,690	55.080
	☐ 장기요양 4등급	51,250	53.580
	☐ 장기요양 5등급	49,790	52.050
	☐ 인지 지원 등급	49,790	52.050
10시간 이상 ~12시간 미만	☐ 장기요양 1등급	67,870	70.950
	☐ 장기요양 2등급	62,870	65.720
	☐ 장기요양 3등급	58,080	60.720
	☐ 장기요양 4등급	56,620	59.190
	☐ 장기요양 5등급	55,180	57.690
	☐ 인지 지원 등급	49,790	52.05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□ 1등급	□ 2등급	□ 3등급	□ 4등급	□ 5등급	□ 인지지원등급
1.885.000	1.690.000	1.417.200	1.417.200	1.121.100	624.6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화재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및 9%